

NASC

Volume.
News Letter
www.nasc.or.kr

03



11차 OECD 발생주의 심포지엄 참관기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국가회계제도 동향

외국회계제도 동향

주요질의 회신 요약

국가회계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공지사항

NASC 국가회계기준센터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enter 국가위탁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선도합니다.

www.nasc.or.kr



NASC

Volume. **03**
News Letter
www.nasc.or.kr



INDEX

11차 OECD 발생주의 심포지엄 참관기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국가회계제도 동향

외국회계제도 동향

주요질의 회신 요약

국가회계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공지사항

11차 OECD 발생주의 심포지엄 참관기

박정규 _ 국가회계기준팀 팀장

Tel_02.3149.7565 / e-mail_ jkpark@kicpa.or.kr

01

개요

3월 3일부터 4일까지 이틀에 걸쳐 각국 정부관계자가 참여하는 11차 OECD 발생주의 심포지엄이 개최되었으며, 발표를 담당한 기획재정부와 함께 이를 참관하였다. 3월 3일 오전에는 IPSASB, IASB, IMF 및 EUROSTAT가 각각 향후 진행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에는 정부회계 및 재정관리 조직에 관한 주제로 벨기에, 캐나다, 미국 및 영국의 발표와 발생주의 회계도입에 관한 각국의 경험을 주제로 오스트리아, 한국, 일본 및 프랑스의 발표가 있었다. 3월 4일에는 IPSASB의 개념체계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와 국가재무제표의 구조와 형식에 대한 주제로 호주, 영국, 스위스 및 미국의 발표가 있었다.

02

IPSAS 개념체계 프로젝트

이번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IPSASB의 향후 계획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개념체계 프로젝트이다. 개념체계 프로젝트는 1단계 재무보고의 목적·정보이용자·질적 특성·보고실체, 2단계 재무제표 구성요소 및 인식, 3단계 자산·부채의 측정, 4단계 재무제표 표시(공시 포함)의 4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의 공개초안 및 2·3단계의 의견수렴서가 2010년말에 공개되어 2011년 6월 15일까지 의견을 접수받을 예정이며, 전체적 프로젝트는 2013년까지 완료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IPSASB는 개념체계 없이 IASB의 개념체계를 사실상 차용하여 왔는데, IASB도 FASB와 공동으로 개념체계 개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IPSAS와 IFRS 간의 컨버전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IPSASB는 IASB의 진행과정을 모니터링할 것이지만 기존 IPSAS와는 달리 컨버전스 프로젝트로 진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정부회계의 근간이 되는 개념을 정의하는 중요한 프로젝트이며, 아직 진행중인 부분이므로 우리나라도 프로젝트 진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03

통계체계 개편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SNA2008 공개에 따른 IMF 및 EUROSTAT의 통계 개편방안이 발표되었다. IMF는 SNA2008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기존 GFS2001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전면개정(revision) 수준은 아닌, 업데이트 수준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2012년까지 공개초안을 완료할 예정이다. EUROSTAT는 SNA2008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기존 ESA95을 대체하는 ESA2010을 2014년부터 시행할 예정으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IMF 및 EUROSTAT의 발표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된 점은 금융위기 이후 양질의 통계 정보 제공의 중요성이 커졌다는 점으로 특히 ESA가 법적 규범 성격인 EUROSTAT는 최근 권한이 확대되고 인력이 보강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도 정부 재정통계 및 그 기초 자료가 되는 회계정보의 생성에 보다 많은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여 양질의 정보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04

IPSAS와의 컨버전스

발표 시간 배분에 나타난 바와 같이 IPSASB가 많은 발언 기회를 가졌으며, 기존의 스위스, 슬로바키아 외에 새로 발생주의 회계를 도입한 오스트리아도 IPSAS를 회계기준으로 수용하고 있어 IFRS를 채택한 영연방 국가나 독자 기준 체계인 미국, 캐나다를 제외한 비영·미권 국가는 IPSAS 도입 비중이 차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프랑스와 같이 직접 IPSAS를 도입하지는 않았더라도 독자적 국가회계기준 제정시 IPSAS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우리나라 국가회계기준도 제정 당시 IPSAS를 참고하였으므로 일정 부분 IPSAS가 고려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IPSAS와의 컨버전스를 염두에 두고 국가회계기준 및 관련 규정의 지속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연결재무제표 도입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정부회계 및 재무관리 조직에 관한 발표에서 각국은 아직 통합된 관리시스템의 구축이 이행중인 단계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많으며, 따라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가장 통합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심포지엄에 참관 자격으로 방문한 케냐 등 개발도상국은 우리나라 사례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이는 참가국 중 거의 유일하게 개발도상국 단계를 거쳤다는 점이 작용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활용한다면 우리나라가 사용중인 각종 관리시스템을 해외에 보급할 좋은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발생주의 회계도입에 관한 각국의 경험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공통적으로 발생주의 도입의 목표로 강조되는 것은 결과(성과)지향, 효율성, 투명성 등이며, 이는 우리나라 발생주의 회계 도입과정에서도 목표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즉, 발생주의 회계도입의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으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IPSAS 등 국제적 회계기준의 동향 등을 반영한 제도적 기반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국가재무제표의 구조와 형식에 관한 발표에서 중요하게 생각되는 점은 양방향 소통 및 원시자료 공개를 포함하는 개념의 웹기반 정보공개와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비재무보고 요소에 대한 정보제공이다. 웹기반 정보공개는 우리나라도 충분히 발전되어 있지만, 양방향 소통 및 원시자료의 공개는 아직 시작단계라고 생각되므로 장기적 발전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은 2010년의 제10차 심포지엄의 핵심주제로서, 최근 금융위기 상황과 맞물려 그 중요성이 더욱 크게 인식되고 있다. 장기 재정 지속가능성 프로젝트는 여러 나라에서도 아직 진행중인 단계이므로 우리나라도 관련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하고 우리 실정에 부합하는 재정 지속가능성 정보 제공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국가회계기준센터 동향

진태호 연구원 _ 국가회계기준센터 국가회계기준팀

Tel_02_3149,7552 / e-mail_ redsplit@kicpa.or.kr



01 | 공적연금충당부채 세미나 개최(2.25)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공적연금 회계처리방안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2월 25일 「공적연금 회계준칙」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한국공인회계사회 대강당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국가 연금 회계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정부관계자, 회계관련 학계 및 공인회계사 등 각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해 큰 성황을 이루었다.

축사에서 신형철 기획재정부 회계결산심의관은 향후 국가재정건전성 판단과 국가재정운용 전략 수립시 주요 지표가 될 것이며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필수 검토 사안이 될 공적연금부채 인식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주제발표 후 지정토론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발표 주제는 4대연금의 연금충당부채 인식범위(김경호 홍익대학교 교수), 보험수리적 평가방법(이석영 성신여자대학교 교수), 연금충당부채 공시범위(박정규 국가회계기준팀장)의 3개 주제로 발표되었다.



발표에 이어 지정토론에서 이성규 서울여자대학교 교수는 미래납세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들을 포괄할 수 있는 공적부채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윤영진 계명대학교 교수는 국제적 비교가능성과 해당 정보의 활용가능성의 조화문제를,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재정통계의 기본이 되는 재무정보의 완전성에 초점을 맞추어 토론을 진행하였다.

국가회계기준센터는 이번 「공적연금회계준칙」 마련을 위한 세미나를 통해 제시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연금회계준칙 제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연금회계준칙은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거쳐 2011년 상반기 중 제정될 예정이다.

02 11차 OECD 발생주의 심포지움 참석(3.3~4)

국가회계기준센터는 3월 3일부터 4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11차 OECD 발생주의 심포지움』에 기획재정부 관계자와 함께 참관하였다.

3월 3일 오전에는 IPSASB, IASB, IMF 및 EUROSTAT가 각각 향후 진행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에는 정부회계 및 재정관리 조직에 관한 주제로 벨기에, 캐나다, 미국 및 영국의 발표와 발생주의 회계 도입에 관한 각국의 경험을 주제로 오스트리아, 한국, 일본 및 프랑스의 발표가 있었다.

3월 4일에는 IPSASB의 개념체계 프로젝트에 대한 발표와 국가재무제표의 구조와 형식에 대한 주제로 호주, 영국, 스위스 및 미국의 발표가 있었다.

03 제3차 국가회계기준자문위원회 개최(3.8)

국가회계기준센터 업무의 전문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센터 내 자문기구인 국가회계기준자문위원회(위원장 전중열위원, 서울과학기술대학 경영학과교수)가 3월 8일 한국공인회계사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국가회계기준센터 사업수행계획, 연금회계준칙 제정안,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 개정안, 국고금 회계처리지침 개정안 등 4개의 안건을 보고하고 센터 업무방향에 대한 자문을 받았다.

04 보험보증회계준칙 제정안 T/F 1,2,3차 회의개최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는 보험·보증회계준칙 제정안 마련을 위하여 각 기금의 보험, 보증관련 회계 담당자로 구성된 T/F를 구성하여 세차례에 걸쳐 『보험보증회계준칙 제정안』 T/F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각 기금별로 관련 법률에 따라 계상하고 있는 준비금 및 적립금의 부채 인정 여부 및 부채 평가 여부에 관한 토론이 진행되었다. 보험보증회계준칙은 이번 T/F 회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를 거쳐 상반기 중 제정될 예정이다.

05 영문홈페이지 개설

정부회계와 관련된 해외이용자에게 대한민국의 국가회계기준을 홍보하고, 관련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회계기준센터 영문홈페이지가 2월 10일 개설되었다. 영문홈페이지는 [About NASC], [Related Laws & Regulations], [Library], [Others] 이상 4개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각각 국가회계기준센터에 대한 소개, 국가회계법 등 관련법령자료, 연구보고서 등 최근 활동소식, 유관기관 사이트링크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http://www.nasc.or.kr/english>)



06 국가회계·결산지원단 교육 및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 지원(1~3월)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기획재정부에서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전문인력을 각 중앙관서에 현장배치하여 재무제표 작성 지원 및 회계처리 검토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국가회계·결산지원단(이하 '지원단')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업무 지원에 기여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강의를 지원하였다. 국가회계기준센터의 전문교육은 연구원의 각 담당분야에 따라 국가회계 강의를 실시, 지원단 배치 일정에 따라 1월부터 3월까지 총 3회 11일간 이루어졌으며 전문교육을 마친 지원단 36명은 47개 중앙관서에 배치되어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의 도입과 정착을 위하여 각 부처의 재무결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가회계기준센터는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 사전준비작업의 일환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이하 '디브레인')에서 산출되는 기금·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 양식을 사전 검토하였다. 또한 디브레인 연계 기관들의 전기 재무정보 수정 가능여부를 검토하여 기관들에게 통보하였다. 이러한 사전준비 작업을 거친 후 삼일회계법인과 공동으로 83개 기금기업특별회계 결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기획재정부의 2010회계연도 정부결산업무를 지원하였고, 향후 중앙관서 결산보고서 검토 및 국가통합재무제표 작성 지원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국가회계제도 동향



임정혁 연구원 _ 국가회계기준센터 평가분석팀
Tel_02,3149,7553 / e-mail_ rau438@kicpa.or.kr

01

제13차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 개최 (3.11)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의 의결기구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위원장 류성길 기획재정부차관)가 3월 11일 기획재정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국가회계기준센터 사업수행계획, 연금회계준칙 제정안,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 개정안 등 3개의 안건에 대해 보고 및 심의를 받았다. 이날 국가회계제도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안건 중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 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연금회계준칙 제정안은 부채소위원회에서 재심의할 것을 주문하였다.

02

유·무형자산 감가상각회계처리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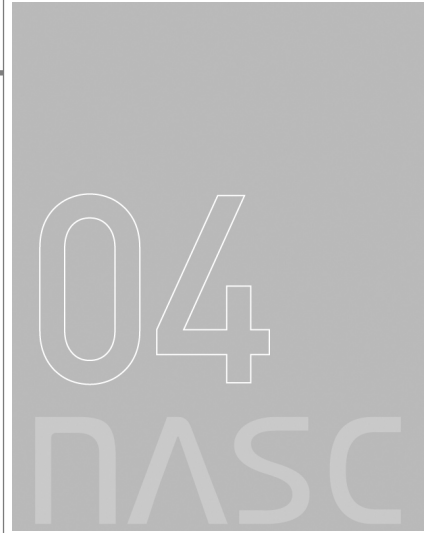
3월 11일에 개최된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관련 세부적인 회계처리방법을 규정한 「유·무형자산 감가상각 회계처리 지침 개정안」이 심의의결 되었다. 개정사항의 주요내용은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건물·구축물의 내용연수의 경우 기준내용연수를 세분화하여 제시하고 관리상태 및 자산별 특수성을 고려하여 내용연수의 조정을 허용하였다. 집기·비품의 내용연수는 조달청장이 고시한 내구연한을 일괄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하였다. 상각방법은 정액법에 따른 상각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정률법등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각 중앙관서에 배치된 국가회계·결산지원단 전문 인력은 결산 마감 일자에 따라 기금 및 기업특별회계(2,28)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3,25), 그리고 각 중앙부처(3,31)의 재무결산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센터는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서울과 대전 등 25개 부처를 현장 방문하여 재무결산 진행현황을 점검하고 결산담당 공무원 및 전문 인력의 건의사항과 개선사항을 수렴하였다. 국가회계·결산지원단은 재무결산 마감일 끝나는 4월부터 재무결산서와 오류사례 분석 및 개선사항 도출을 통해 발생주의·복식부기의 공무원 인식제고 및 2011회계연도 재무제표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각 부처별로 교육 등을 5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외국회계제도 동향

손은하 연구원 _ 국가회계기준센터 국제협력팀

Tel_02,3149,7559 / e-mail_ ehshon@kicpa.or.kr



이번 외국회계제도 동향은 기존에 조사해온 미국, 캐나다, 호주, IPSASB 등에 보고할 만한 중요한 변동 사항이 없어 OECD 심포지엄에서 발표한 내용 중 오스트리아와 일본에서 발표한 내용을 간략히 요약해 보았다.

발표 내용 중 오스트리아와 일본의 내용을 기재한 이유는 발생주의 도입과 관련하여 종전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01

오스트리아

오스트리아는 결산서류가 결과지향(impact orientation), 효율성, 투명성, 진실하고 공정한 관점(true and fair view)에서 작성되고, 통합적으로 재무관리 및 성과관리를 하도록 개선하며, 운영상의 유연성(managerial flexibility)과 회계책임성(Accountability) 간의 새로운 균형을 위해서 예산 및 회계에 발생주의를 전면 도입할 예정이다.

주요내용은 IPSAS 기반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하여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현금흐름표를 기본재무제표로 하고, 세가지 모형의 원가보고서 양식을 도입하며, 예산에 대해서는 이중 시스템을 통해 현금주의 및 발생주의 수치에 대해서 통제할 예정이다.

2010년부터 새로운 요소에 대한 자료 수집 및 기존 자료 업데이트를 통하여 2010년 말 현재 개시재정상태표를 작성한 후 2011년과 2012년에는 시범 운영 및 병행적용을 통하여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일본은 다양한 보고서를 통한 재무상황 표시를 위해 2000년부터 발생주의 접근법을 채택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2007년에 특별회계와 관련한 법이 개정되어 특별회계에 대한 발생주의 재무제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하며, FY2007 특별회계 재무제표가 2009년 1월에 제출되었다. 한편, 법적의무는 아니지만, 다양한 정보제공 목적으로 현금주의 결산서를 발생주의 재무제표로 전환하여 재무성 웹사이트에 게시하고 있으며, 부처별 재무제표 (Ministerial Statements)는 2월 게시하고 국가 통합재무제표(Consolidated Statement by the Government)는 6월 게시하고 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운영원가표(Operating Cost Statement), 자산과 부채의 차이 변동표(Statement of Change in Difference between Assets and Liabilities), 현금흐름표 4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공공사용을 위한 국유재산(예: 강, 교량, 공항, 국유림 등)은 현금주의 결산서 상 총지출 누계액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연금제도 관련 자산과 부채 역시 발생주의 재무제표에 연금의 적립기금(reserve fund)과 공적연금적립금(deposit reserved for the public pension)을 계산하여 계상하고 있다.

주요 질의회신 요약



임정혁 연구원 _ 국가회계기준센터 평가분석팀
Tel_02.3149.7553 / e-mail_ rau438@kicpa.or.kr

질의회신 2011-8 — 국가외의 상대방과 토지를 교환한 경우 취득가액 측정

- 질의** 국가외의 상대방과 토지를 교환한 경우 취득하는 자산가액을 '장부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①항에서 국가 외의 상대방과의 교환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공정가액'으로 취득원가를 계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금이 취득하는 토지의 원가는 '공정가액'으로 계상하여야 함

주요 유선질의 회신1 — 위약금, 벌금 등 수취로 인해 발생한 제재금수익의 회계처리

- 질의** 위약금, 벌금 등 수취로 인해 발생한 제재금수익은 잡이익과 비교환수익 중 어떤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 답변**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지침」 p.220 <IV. 비교환수익 등>에 따라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으로 인한 수익은 비교환수익으로 분류함

주요 유선질의 회신2 — 사용자보조원가 및 사용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의 회계처리



질 의 사용자보조원가 및 사용자보조원가충당금환입은 프로그램원가(수익) 또는 비배분비용(수익) 중 어느 것으로 구분해야 하는지?



답 00 「용자회계준칙」 제13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보조원가 및 사용자원가충당금 환입은 각각 프로그램직접원가와 프로그램수익으로 인식해야 함

주요 유선질의 회신3 — 사용자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의 회계처리



질 의 사용자프로그램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프로그램수익과 비배분수익 중 어떤 것으로 분류되어야 하는지?



답 00 비배분수익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익을 말하며, 이자수익은 「원가계산준칙」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러한 비배분수익의 대표적인 항목에 해당하므로 비배분수익으로 분류되어야 함

단, 같은 조항의 제3항에 따라 이자수익을 발생시킨 회계실체가 자산의 취득 및 관리, 처분, 외환관리, 자금 관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프로그램수익으로 구분 가능함

주요 유선질의 회신4 — 소송 관련 회계처리



질 의 소송과 관련된 확정부채와 총당부채의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인식하여야 하는지?



답 00 패소가 확정되어 발생한 확정부채의 경우 [기타비유동부채(III)] -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IV)] - [기타부채(V)]으로 인식함

계류 중인 소송과 관련 우발손실의 발생이 거의 확실한 경우 인식하는 총당부채는 [장기충당부채(III)] - [기타장기충당부채(IV)] - [기타의기타장기충당부채(V)]으로 인식함

국가회계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현지용 연구원 _ 국가회계기준센터 평가분석팀
Tel_02,3149,7567 / e-mail_hyunjy@kicpa.or.kr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연계

01 머리말

2009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에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도입되었다. 이는 1960~1970년대에 도입·시행된 후 수 십년 동안 유지되어 온 기존의 현금주의·단식부기 체계를 변화시킨 것으로서 우리나라 국가회계제도의 일대 혁명이라고 이를 만하다.

지금까지 현금주의·단식부기 회계방식은 예산의 집행실적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예산을 통제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예산 집행의 자율성, 재정수요의 급증 등 재정을 둘러싼 제반 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 여부를 점검하고 성과평가가 가능한 새로운 선진 재정운영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래서 국가재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파악과 관리가 가능하고 국가자산·부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가 2009회계연도부터 모든 국가재정 부문에 도입된 것이다.

하지만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결산 정보가 기존의 현금주의·단식부기에 의한 예산회계결산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그러므로 현재 국가회계법에 의한 결산보고서는 예산회계결산(세입·세출결산)과 재무회계결산(재무제표)을 모두 포함하는 이중체제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및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등을 통해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을 상호 연계시켜 나가고 있다. 다시 말해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의한 재무회계결산제도의 도입은 현행 현금주의·단식부기에 의한 예산회계결산제도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것이고, 현행 국가결산보고서는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글에서는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의의 및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을 포함하는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 그리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등을 통한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연계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통해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상호 보완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02 현금주의·단식부기에 의한 예산회계결산

현금주의(Cash Basis of Accounting)는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이 있을 때 회계거래로 인식하여 회계정부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현금주의에 의하면 현금의 유입은 수입 또는 수익으로 기록되고 현금의 유출은 지출 또는 비용으로 기록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예산회계결산은 현금주의에 의해 현금의 유입을 세입(기금의 경우 수입)으로, 현금의 유출을 세출(기금의 경우 지출)로 기록하여 회계연도 말에 세입세출결산보고서(기금의 경우 수입지출결산보고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또한 현금주의에서는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정보는 별도의 기록을 통해 관리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산과 부채를 그 종류에 따라 국유재산, 물품, 국가채권, 국가채무로 구분 관리하고 각각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국가채무관리보고서의 형태로 국회에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현금주의에 의한 예산회계결산은 단순하고 예산과 실제지출액을 비교하기 쉽기 때문에 예산을 통제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아래와 같은 단점이 존재한다.

첫째, 국가재정의 총괄적·체계적인 현황파악이 곤란하다. 정부의 재정활동은 세입·세출예산, 국유재산, 물품, 국가채권·채무 등으로 구분하여 회계처리 되고 있으나 상호간에 연계성이 없이 단편적으로 구분 관리되고 있어 국가재정에 대한 총괄적·체계적인 인식과 관리가 불가능하다.

둘째, 국가자산·부채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 한계가 존재한다. 정부자산·부채에 대한 개념이 경제적 가치 측면에서 정립되어 있지 못하고 법적인 권리·의무 측면에서만 나열식으로 정리되고 있어 미래의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부채가 적절하게 인식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공무원 및 군인연금급여는 미래의 지급에 대비한 정부의 부담을 매 회계연도별로 인식하여 실질적 부채로 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로 인식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건설중인 자산의 경우 이미 예산이 투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나 완공 후에야 비로소 국유재산으로 등재된다.

셋째, 자기검증 및 회계간의 연계성 분석기능이 결여되어 있다. 현금주의에 의한 예산회계결산은 자산과 부채, 현금수지 등이 각각의 대장에 독립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회계 상호간의 연계성 파악이 곤란하고 정부거래의 부정이나 오류 발견 가능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현금주의·단식부기에 의한 예산회계결산의 문제점으로 인해 아래에 설명하는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결산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03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결산

발생주의(Accrual Basis of Accounting)는 경제적 자원의 변동에 기준을 두어 경제적 자원의 획득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고 경제적 자원이 소비되면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방식이다. 회계기록의 초점을 현금의 유출입과는 별도로 경제적 자원의 변동 여부에 맞추기 때문에 발생주의 회계는 재정상태와 재정운영결과를 잘 표시하게 된다.

또한 발생주의 회계에서는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구분하여 기록하므로 현금주의에서처럼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정보를 별도의 기록을 통해 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감가상각누계액과 감가상각비,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비와 같이 자산의 측정과 평가를 위한 기록을 하게 된다. 그리고 선급비용이나 미지급비용, 선수수익이나 미수수익과 같이 현금의 유출입과 수익·비용의 발생시점에 차이가 있는 항목을 조정하는 회계처리를 하게 된다.

이러한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회계결산은 현금주의에 의한 예산회계결산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국가재정의 총괄적·체계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 즉, 통합재정상태표를 작성하여 국가재정 전체에 대한 총괄적·체계적 인식이 가능하다.

둘째, 국가자산·부채를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국가자산·부채에 대한 개념이 경제적 가치측면에서 정립되어 있으므로 미래의 국가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부채가 적정하게 인식된다. 따라서 미래의 국가채권·채무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조기관리체제를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정부재정활동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다. 대차평균의 원칙 아래 자기검증 기능을 갖는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회계부정의 소지를 막고 재정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넷째, 공공부문의 생산성제고를 위해 유용한 회계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공공부문 행정 성과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서는 부처별, 사업별 총비용과 총산출을 동시에 비교해야 하는데 이 경우 총비용은 단순한 현금지출 비용 이외에 감가상각비 등 발생주의 비용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재무회계결산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우리나라는 2009회계연도부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 제도를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결산보고서인 재무제표를 포함하게 되었다.

04 국가결산보고서의 구성

현재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라 결산개요, 현금주의에 의한 예산회계결산자료로서 세입세출결산(기금은 수입·지출결산),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회계결산자료로서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등 크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결산개요는 회계, 기금의 결산내용을 요약하여 작성한 것으로, 예산 및 기금의 집행 결과, 재정의 운영 내용과 재무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되며 일반현황, 세입·세출분석, 재무제표분석, 성과보고분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둘째, 현금주의에 의한 예산회계결산자료로서 세입·세출결산은 회계·기금 등 각 결산주체가 세입세출 예산(기금의 경우 기금운용계획)과 같은 구분에 따라 그 예산집행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하는 결산보고서로서 세입·세출결산(기금은 수입·지출결산)으로 구성된다.

셋째, 발생주의에 의한 재무회계결산자료로서 재무제표는 정부부처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 부채 및 순자산의 정보를 제공하는 재정상태표, 일정기간동안의 재정운영결과를 보여주는 재정운영표, 그리고 재정상태표상 순자산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순자산변동표를 포함한다. 이 외에도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한 주석,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로서 필수보충정보,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 명세를 표시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부속명세서 등이 결산보고서상 재무제표를 구성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는 「국가재정법」 제8조에 따른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프로그램별로 작성된 보고서로서 일반현황, 전략목표, 정책운용방향, 성과보고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결산보고서 구성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 국가결산보고서 체계는 예산회계결산(세입·세출결산)과 재무회계결산(재무제표)을 모두 포함하는 이중체제로 구성되어 있어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은 다음에 설명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및 자산부채조정명세서 등을 통해 상호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05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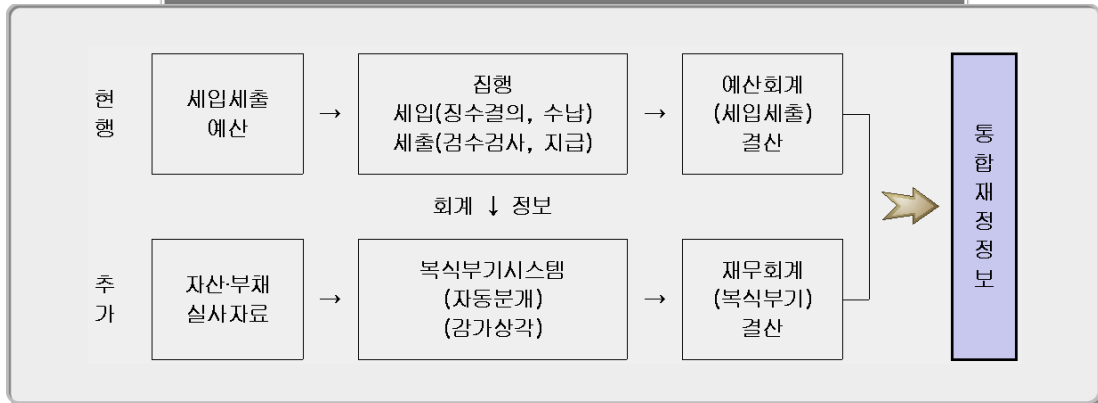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연계방식은 크게 완전연계와 불완전연계로 나눌 수 있다. 완전연계는 예산과목을 재무회계계정과목과 일치시켜 예산회계시스템과 재무회계시스템이 동일한 체제 내에서 운영되는 방식을 의미하고, 불완전연계는 예산과목이 관리항목을 통해 재무회계계정과목으로 전환되는 방식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불완전연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아래에서 설명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을 통해 그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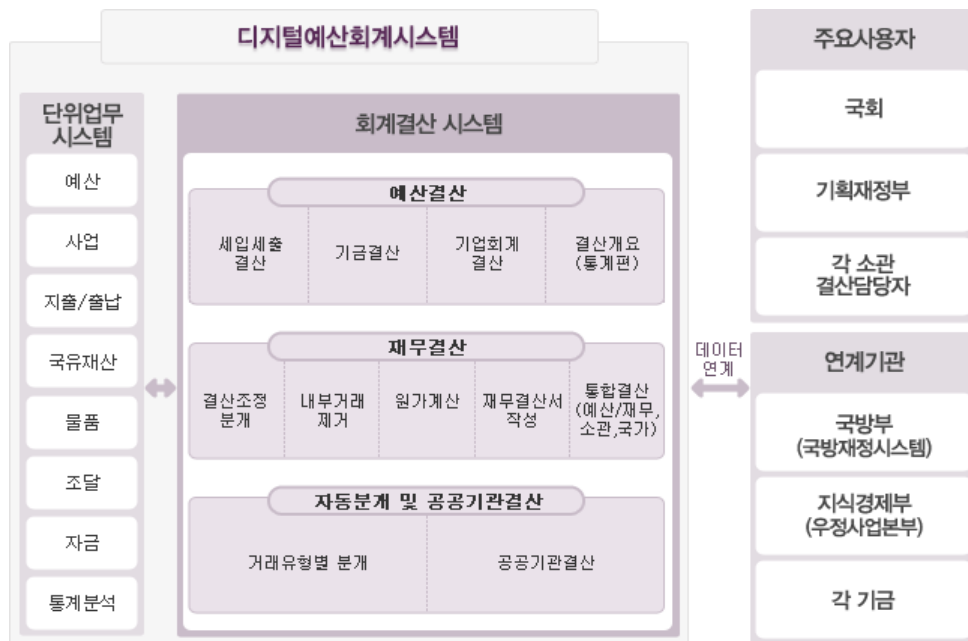
정부는 2007년부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을 수행하고 있다.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예산편성, 집행, 결산, 성과관리 등 국가 재정활동의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처리·관리되는 통합정보시스템으로서, 중앙정부의 재정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재정혁신을 뒷받침하며 재정의 실시간관리를 가능하게 하고 재정통계 분석정보를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발생주의 회계의 도입으로 예산 거래유형에 따라 예산회계결산 정보가 재무회계결산 정보로 전환될 수 있도록 계정과목 체계를 정비하여, 예산과목과 재무제표 계정과목 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한 연계체계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예산과목과 재무제표 계정과목 간의 연계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서 계정과목 매핑표에 따른 자동분개 처리를 통해 이루어진다.

▣ 디브레인 자동분개를 통한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의 연계 ▣



다시 말해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은 회계결산시스템을 통해 수입, 지출, 국유재산, 물품, 채권 시스템 등 재정집행과 관련된 모든 단위업무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으며, 일선관서의 업무담당자들이 수입·지출처리를 하거나 국유재산·물품의 취득·처분 등의 재정집행행위를 할 때 마다 자동적으로 복식부기 회계처리가 되도록 운영된다. 또한, 이 시스템은 각 관서의 결산담당자가 현금의 흐름과 관련한 예산회계결산서 뿐만 아니라 발생주의·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결산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결산 조정분개·내부거래제거·원가계산 기능 등을 제공하며, 각 중앙관서 재무회계결산서를 통합한 정부통합결산서도 이 시스템을 통해서 작성된다.



2 자산부채조정명세서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현금주의 예산회계결산에서는 자본거래와 손익거래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정보는 별도의 기록을 통해 관리하게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자산과 부채를 그 종류에 따라 국유재산, 물품, 국가채권, 그리고 국가채무로 나누어서 각각 관리해 오고 있다.

국유재산은 국가의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이나 조약에 따라 국가소유로 된 것으로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임목죽, 선박, 항공기, 유가증권, 무체재산 등 총 9종으로 분류되며,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재정상태표에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투자자산, 무형자산 등으로 계상될 수 있다.

물품은 국가가 소유 또는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는 동산으로 전기·통신기기, 사무용기기·집기, 운반·건설기계·차량 등 총 10종으로 나누어서관리되는데 재정상태표에 일반유형자산(기계장치, 집기·비품·차량운반구 등) 으로 분류될 수 있다.

국가채권은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융자회수금, 예금및예탁금, 조세채권 등으로 구분되며 재정상태표의 유동자산(미수채권, 단기금융상품, 단기대여금 등) 및 투자자산(장기미수채권, 장기금융상품, 장기대여금 등)에 해당한다.

국가채무는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발행한 채권(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를 말하는데 재정상태표에 유동부채(단기국채, 단기차입금 등) 및 장기차입부채(국채, 장기차입금 등) 등으로 계상할 수 있다.

이러한 국유재산, 물품, 국가채권, 국가채무는 관련 법령과 결산지침에 따라 각각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운용보고서,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국가채무관리보고서의 형태로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그 보고 금액이 보고대상기관차이, 국가상호간 채권·채무차이, 결산조정항목차이, 결산대상항목차이 등의 사유로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재정상태표상의 자산·부채가액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첫째, 보고대상기관차이는 국가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기관과 각 개별법(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채권관리법, 국가재정법)상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기관이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의미한다.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전체 63개 기금 중 24개)의 경우 기금의 관리주체가 정부가 아니라 민간이므로 개별법 보고서(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등)를 작성하지 않는다. 따라서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지 않는 기금은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재정상태표를 작성하지만 개별법 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으므로 재정상태표와 개별법 보고서 간의 자산·부채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면 사학진흥기금은 재정상태표를 작성하여 자산·부채를 계상하지만 개별법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국유재산, 물품, 국가채권 및 국가채무로 보고되는 금액이 없으므로 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둘째, 국가상호간 채권·채무차이는 국가회계기준상 내부거래제거 기준과 각 개별법상 내부거래제거 기준이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의미한다. 국가기관 상호간에 예치한 예금과 예탁금의 경우 개별법상 결산서에는 제외되지만 국가회계기준에 따른 재정상태표에는 계상되므로 재정상태표와 개별법 보고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예를 들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금을 예치하는 경우 농산물가격안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재정상태표에는 예탁금이 각각 자산·부채로 계상되지만

개별법 보고서에는 국가상호간 채권·채무로 분류되어 보고서에서 제외된다. 다만 국가전체의 통합재정상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에서 기금 간 내부거래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금이 상계 제거되므로 개별법 보고서와의 차이가 소멸된다.

셋째, 결산조정항목차이는 개별법상 결산서는 현금주의에 의해 작성되나 국가회계기준에 의한 재정상태표는 발생주의에 의해 작성됨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의미한다. 국가회계기준상 미수이자(발생주의에 의해 지불기일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기간이 경과하여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채권관리법상 미수이자(발생주의에 의해 지불기일이 도래한 금액만을 국가채권으로 계상하므로 개별법 보고서와 재정상태표 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미수이자 이외에 미지급비용, 선수수익, 선급비용 등 대부분의 결산조정항목들이 개별법 보고서와 재정상태표의 차이를 구성한다.

넷째, 결산대상차이는 각 개별법의 적용을 받는 자산·부채의 범위가 국가회계기준의 적용을 받는 자산·부채와 일치하지 않음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의미한다. 건설중인 자산, 금융리스 자산, 판매용물품, 국고예금 등은 관련 개별법령 및 결산지침에 따라 개별법 보고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재정상태표에는 계상되므로 개별법 보고서와 재정상태표의 차이 항목을 구성한다. 예를 들면 농산물가격안정기금에서 한국은행 국고에 예치한 국고금은 재정상태표에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계상되지만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에는 제외된다.

이러한 다양한 사유로 인해 현금주의 예산회계결산의 산물인 개별법 보고서와 발생주의 재무회계결산의 산물인 재정상태표의 자산·부채금액 차이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정부결산작성지침을 통해 재무제표의 별첨자료로 아래와 같이 자산부채조정명세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이 자산부채조정명세서를 통해 개별법 보고서 상의 국유재산, 물품, 국가채권, 국가채무의 기말현재액과 재정상태표상의 자산·부채의 금액 차이내역과 그 사유를 파악할 수 있다.

▣ 자산·부채조정명세서 ▣

(단위: 백만원)		
구 분	자 산	부 채
I. 개별법 자산·부채 금액	XXXX	XXXX
1. 국가채권현재액	XXXX	-
2. 국유재산현재액	XXXX	-
3. 물품현재액	XXXX	-
4. 국가채무합계	-	XXXX
II. 재무제표 자산·부채 금액	XXXX	XXXX
III. 차이내역(II - I = A+B+C+D+E)	XXXX	XXXX
1. 보고대상기관차이(A)	XXXX	XXXX
2. 국가상호간 채권·채무차이(B)	XXXX	XXXX
3. 결산조정항목차이(C)	XXXX	XXXX
4. 대상차이(D)	XXXX	XXXX
5. 기타차이(E)	XXXX	XXXX

3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인식기준 차이에 따라 예산회계결산상의 세입세출의 차이인 총잉여금과 재무회계결산상의 수익과 비용의 차이인 재정운영결과는 서로 차이가 날 수 밖에 없다. 이에 따라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에서는 회계실체의 성과평가 지표 중 하나인 총잉여금과 재정운영결과의 차이를 설명한다. 총잉여금이란 회계실체의 세입에서 세출을 차감한 잔액이다. 현금주의로 인식하는 예산회계결산에서 세입(세출)은 현금의 유입(유출)이다. 따라서 총잉여금은 현금주의 관점에서 기록된 재정운영결과라고 할 수 있다. 재정운영결과란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하여 산출한 것으로 공공부문의 성과측정을 돕기 위한 마지막 줄(bottom line)이다. 기업회계의 당기순이익과 의미하는 바가 다르지만, 측정방식(수익·비용을 발생주의에 의해 인식)이 동일하다.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는 총잉여금과 재정운영결과의 차이, 즉 수익과 비용을 인식할 때 적용되는 기준간의 차이에 대한 명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현금주의는 현금의 유입이나 유출이 있을 때 회계거래로 인식하여 회계정부에 기록하는 방식인 반면에 발생주의는 경제적 자원의 변동에 기준을 두어 경제적 자원의 획득이 실현되는 시점에서 수익을 인식하고 경제적 자원이 소비되면 이를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방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총잉여금과 재정운영결과 간에는 차이가 존재하고, 이를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의 차이항목을 통해 설명하여 그 내역과 사유를 파악할 수 있다.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는 크게 ‘자산·부채의 증감’, ‘발생주의 기간수익·비용 차이’, ‘순자산변동’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자산·부채의 증감은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는 거래 중 자산의 증가 및 부채의 감소거래는 (+) 금액으로 기재하고, 자산의 감소 및 부채의 증가는 (-) 금액으로 기재한다. 이는 현금의 증감과 재정운영결과간의 차이가 자산, 부채, 순자산의 증감으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둘째, 발생주의 기간수익·비용 차이는 기본적으로 현금 유출을 수반하지 아니하여 세입·세출 예산에는 포함되지 아니하나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에 반영된 항목들의 금액을 기재(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된 비예산 수익·비용 포함)한다. 대표적인 항목으로 감가상각비와 대손상각비가 있다.

셋째, 순자산변동은 현금 유출입을 수반하여 세입 또는 세출에는 포함되나 재정운영표의 재정운영결과에 반영되지 않고 순자산변동표의 ‘재원의조달및이전’ 또는 ‘조정항목’에 반영되는 항목들의 금액을 기재(실제 현금 유출입이 발생한 금액을 기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회계와 사업회계간의 차이가 발생한다. 행정회계의 비교환수익은 재정운영결과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차이항목’에 기재하나, 사업회계의 비교환수익은 재정운영결과에 반영되므로 ‘차이항목’에 기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차이항목들로 인하여 총잉여금과 재정운영결과 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국가회계기준을 통해 재무제표의 필수보충정보로 아래와 같은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무제표이용자들은 예산회계결산의 결과치인 총잉여금과 재무회계결산의 결과치인 재정운영결과 간의 차이 금액과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

총잉여금 · 재정운영결과조정표

	20XY	20XX
I. 총잉여금(*)	XXX	XXX
II. 차이 항목	XXX	XXX
1. 자산 · 부채의 증감	XXX	XXX
(1) 금융상품의 증가(감소)	XXX	XXX
(2) 투자증권의 증가(감소)	XXX	XXX
(3) 대여금의 증가(감소)	XXX	XXX
(4) 일반유형자산의 증가(감소)	XXX	XXX
(5) 무형자산의 증가(감소)	XXX	XXX
(6) 기타자산의 증가(감소)	XXX	XXX
(7) 국공채의 감소(증가)	(XXX)	(XXX)
(8) 차입금의 감소(증가)	(XXX)	(XXX)
(9) 기타부채의 감소(증가)	(XXX)	(XXX)
2. 발생주의 기간수익 · 비용 차이	XXX	XXX
(1) 부담금수익 차이	XXX	XXX
(2) 제재금수익 차이	XXX	XXX
(3) 재화및용역제공수익 차이	XXX	XXX
(4) 사회보험수익 차이	XXX	XXX
(5) 연금수익 차이	XXX	XXX
(6) 보험수익 차이	XXX	XXX
(7) 보증수익 차이	XXX	XXX
(8) 이자수익 차이	XXX	XXX
(9) 평가이익 차이	XXX	XXX
(10) 기타수익 차이	XXX	XXX
(11) 퇴직급여 차이	(XXX)	(XXX)
(12) 이자비용 차이	(XXX)	(XXX)
(13) 감가상각비 차이	(XXX)	(XXX)
(14) 대손상각비 차이	(XXX)	(XXX)
(15) 기타이전비용 차이	(XXX)	(XXX)
(16) 평가손실 차이	(XXX)	(XXX)
(17) 자산감액손실 차이	(XXX)	(XXX)
(18) 기타비용 차이	(XXX)	(XXX)
3. 전기 결산상 잉여금 세입이입액	(XXX)	(XXX)
4. 순자산변동	XXX	XXX
(1) 부담금수익	(XXX)	(XXX)
(2) 제재금수익	(XXX)	(XXX)
(3) 기타비교환수익	(XXX)	(XXX)
(4) 무상이전수입	(XXX)	(XXX)
(5) 기타재원조달	(XXX)	(XXX)
(6) 무상이전지출	XXX	XXX
(7) 기타재원이전	XXX	XXX
(8) 납입자본의 증감	XXX	XXX
(9) 기타순자산의 증감	XXX	XXX
5. 국세수익 수납액	(XXX)	(XXX)
(1) 소득세수입	(XXX)	(XXX)
(2) 법인세수입	(XXX)	(XXX)
...
6. 내부거래 차이	(XXX)	(XXX)
III. 재정운영결과(I+II)	XXX	XXX

4 맺는말

지금까지 우리는 이 글을 통해 현금주의·단식부기에 의한 예산회계결산과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결산이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나라 국가결산보고서에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이 어떤 형태로 반영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산부채조정명세서,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를 통해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이 어떻게 상호 연계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요약하면, 현금주의·단식부기에 의한 예산회계결산은 예산통제에 있어 매우 효과적이지만 자산·부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결산이 도입되었고, 우리나라 국가결산보고서는 이러한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을 모두 포함하는 체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산회계결산과 재무회계결산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산부채조정명세서, 총잉여금재정운영결과조정표를 통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과거 수십 년 동안 유지되어 온 현금주의·단식부기에 의한 예산회계결산에 익숙해져 있는 정부부처 관계자, 국회 등 이해당사자들은 새로이 도입된 새 회계제도, 즉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결산이 낯설고 복잡하게 느껴질 지도 모른다. 하지만 새로운 회계제도의 성패는 제도 그 자체보다 이해 당사자들이 얼마나 제도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으므로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다.



국가회계기준센터 공지사항

김상노 _ 국가회계기준센터 총괄팀장

Tel_02.3149.7551 / e-mail_alcaz@kicpa.or.kr

국가회계기준센터 연구원 모집

국가회계기준센터는 국가의 발생주의 회계제도 도입 및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전문적인 연구, 조사 및 유권해석 등의 업무를 수행할 전문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1. 채용분야 및 채용인원

- 연구원 0명 (국가회계기준팀, 평가분석팀)

2. 자격기준

-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대학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대한민국 또는 외국의 대학에서 법학·행정학·경제학·경영학(회계학 전공)과 관련하여 박사 학위를 취득한 자
 - 국가재정 또는 회계 및 평가분석 등 행정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 참조



국가회계저널 발간을 위한 논문 공모

국가회계기준센터는 다음과 같이 국가회계저널에 게재할 논문을 공모합니다.

1. 공모 주제

- 발생주의 국가회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전략
- 국가재무제표 활용 방안
(프로그램 원가 산출을 통하여 예산에 활용방안 등, 구체적인 사례 제시 필)

2. 응모자격

- 제한 없음

3. 응모기간

- 2011. 5. 16 ~ 5. 27 (금) 18:00까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 참조



국가회계 및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 제안

국가회계제도 및 뉴스레터에 대한 의견을 국가회계기준센터 홈페이지의 [의견제안] 메뉴에서 접수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NASC

VISION

국가 재정부문에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정착

전략
목표

발생주의 국가회계운영시스템 정비
국가회계기준의 충실한 이행 방안 마련
재무제표 공시자료 유용성 제고 방안 마련
체계적인 국가회계기준 실무해석 및 질의회신 수행

발생주의 재무정보 활용도 제고
원가정보의 성과지표와의 연계 및 예산에 환류를 위한 방안 마련
발생주의 재무정보를 활용한 체계적인 재정지표 개발
각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분석 및 검토 자료 제공

국내외 회계환경변화 대응
외국정부회계제도(미국, 영국, IPSAS 등) 동향 분석 및 연구
국제 공공부문(지방, 공공기관) 회계환경 동향 분석 및 연구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공감대 형성



국가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발생주의의 도입과 국가회계제도의 선진화
국가회계기준센터가 선도합니다.

NASC 국가위탁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Center 국가회계기준센터

(120-01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 2가 185-10 한국공인회계사회 3층 Tel_ 02.3149.7560 Fax_ 02.3149.7570 Homepage_www.nasc.or.kr

2011년 3월 31일 발행